

의안번호	제 263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2 월 일 (제 305 회)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심기보 의원외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12월 7일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기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
----------	-----

발의년월일 : 2011년 12월 7일

발의자 : 심기보, 강현삼, 김광수
노광기, 김도경, 손문규
장선배

1. 제정이유

-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붐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장기등 기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운영(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 수반(비용추계서) : 별첨
- 집행기관 협의 여부 : 여
- 입법예고 여부 : 부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법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기능)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주민의 장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 관련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직능단체장 및 시민단체 대표
5. 학계,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6. 그 밖에 장기등 기증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장기이식 등록기관 운영)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장기등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등 기증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된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등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골수·안구
 -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배우자
 - 나. 직계비속
 - 다. 직계존속
 - 라. 형제자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1.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4.28>

제27조(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일부개정 2010.3.26 법률 제10191호>

-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1호>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2. 비용 발생요인

-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비용
 - ※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은 비용 발생 없음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6조
-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체

- 위원회 운영비
 - 위원 수 7명(당연직 제외), 년 1회 개최를 가정
 - 70천원×7명+(1시간 초과 수당) : 490천원+210천원 = 700천원
- 홍보활동
 - 홍보 리플릿(6면 정도) : 500원×5,000부 = 2,500천원
 - 공익광고 제작·홍보(지방방송 기준) : 5,000천원 정도(1개월, 1개사)
-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 인지도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추계 곤란

나. 추계 결과

- 위원회 운영비, 홍보활동비 추계(매년) : 18,200천원
 - 위원회 운영(1회) : 700천원
 - 홍보 리플릿(1회) : 2,500천원
 - TV캠페인(1개월,3개사) : 15,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 자체재원 사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성 국 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입	-	-	-	-	-	-
-	-	-	-	-	-	-
세출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위원회 운영비	700	700	700	700	700	3,500
홍보비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87,500
재원조달	-	-	-	-	-	-
의 존 재 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